



2023년 5월

공개초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 방법론과 SASB 기준 택사노미 수정

의견조회기한: 2023년 8월 9일

공개초안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 방법론과 SASB 기준 택사노미 수정

2023년 8월 9일까지 의견수렴

2023년 6월 8일: 이 공개초안은 두 개의 참조 문단을 수정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7 페이지(국문 번역본은 8 페이지)의 1(a)와 1(b)에서 기존에는 문단 9를 참조하고 있었으나, 문단 8을 참조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posure Draft ISSB/ED/2023/1 *Methodology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the SASB® Standards and SASB Standards Taxonomy Updates* i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for comment only. Comments need to be received by **9 August 2023** and should be submitted via the electronic survey at https://ifrs.qualtrics.com/jfe/form/SV_6o2bqaG22DiUTqu or by email to commentletters@ifrs.org or online at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All comments will be on the public record and posted on our website at www.ifrs.org unless the respondent requests confidentiality. Such requests will not normally be granted unless supported by a good reason, for example, commercial confidence. Please see our website for details on this policy and on how we use your personal data.

Disclaim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the ISSB and the IFRS Foundation (Foundation) expressly disclaim all liability howsoever arising from this publication or any translation thereof whether in contract, tort or otherwise to any person in respect of any claims or losses of any nature including direct, indirect, incidental or consequential loss, punitive damages, penalties or costs.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does not constitute advice and should not be substituted for the services of an appropriately qualified professional.

© 2023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Reproduction and use rights are strictly limited. Please contact the Foundation for further details at publications@ifrs.org.

Copies of ISSB publications may be ordered from the Foundation by emailing publications@ifrs.org.

This Korean translation of the Exposure Draft *Methodology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the SASB® Standards and SASB Standards Taxonomy Update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Review Committee appointed by the IFRS Foundation. The copyright for the Korean translation belongs to the IFRS Foundation.



The Foundation has trade marks registered around the world (Marks) including 'IAS®', 'IASB®', the IASB® logo, 'IFRIC®', 'IFRS®', the IFRS® logo, 'IFRS for SMEs®', the IFRS for SMEs® log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Hexagon Device', 'NIIF®' and 'SIC®'. Further details of the Foundation's Marks are available from the Foundation on request.

The Foundation is a not-for-profit corporation under the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USA and operates in England and Wales as an overseas company (Company number: FC023235) with its principal office in the Columbus Building,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This exposure draft is translated by the SR center, Korea Accounting Institute, and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KSSB)'s due process. This translation of the exposure draft is intended to help local stakeholders understand the original exposure draft. Some of the content may be express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exposure draft, so please refer to the original.

공개초안 ISSB/ED/2023/1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 방법론과 SASB 기준 택사노미 수정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의견을 조회만을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의견조회기간은 **2023년 8월 9일**까지이며, https://ifrs.qualtrics.com/jfe/form/SV_6o2bqaG22DiUTqu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거나, commentletters@ifrs.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자가 비밀 유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모든 의견은 공식기록에 남게 되고, 당사 웹사이트 www.ifrs.org에 게시됩니다. 비밀 유지 요청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유(예, 상업 기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책과 귀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적용되는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ISSB와 IFRS재단(‘재단’)은 계약, 불법행위, 그 외 어떤 자에 의한 청구 또는 손해(직접, 간접, 부수적 또는 결과적인 손해, 징벌적 배상, 벌금 또는 비용을 포함)와 관련하여 이 출판물 또는 그 번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본 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조언이 아니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서비스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2023 IFRS 재단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재출간과 사용의 권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permissions@ifrs.org)에 문의하십시오.

ISSB 출판물 사본은 publications@ifrs.org로 이메일을 보내 재단으로부터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 방법론 공개초안과 본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은 IFRS재단이 지정한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IFRS재단에게 있습니다.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상표(‘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IAS®’, ‘IASB®’, IASB® 로고, ‘IFRIC®’, ‘IFRS®’, IFRS® 로고, ‘IFRS for SMEs®’, IFRS for SMEs® 로고,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exagon Device’, ‘NIIF®’ 및 ‘SIC®’가 있습니다. 재단 상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요청에 따라 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재단은 미국 델라웨어 주 일반회사법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해외법인(회사 번호: FC023235)으로 활동하며, 본사는 Columbus Building,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에 소재합니다.

이 공개초안 번역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경영지원센터가 번역한 것으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정규절차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개초안 번역본은 공개초안 원문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발표된 원문과 달리 표현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 방법론

목차

	페이지
서론	5
의견 수렴	7
제안된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 방법론	11
개요	11
방법론	12
SASB 기준 텍사노미 수정	13
향후 일정	14
부록	15
부록 A 개정 접근법 상세	15
부록 B 적용사례	18
부록 C SASB 기준 산업별 개정 예시	23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 방법론과 SASB 기준 택사노미 수정

[초안]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에 관한 방법론과 SASB 기준 택사노미 수정은 문단 [1-19] 및 부록 A-C에 설명되어 있다.

서론

ISSB가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유

- IN1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IFRS S1)은 글로벌 자본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일반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이 정보에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포함된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적절하게 공시하기 위한 특정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부재한 경우, 기업들은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이 SASB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관할권 특유의 내용을 포함하는 SASB 기준 지표를 검토하고 개정을 고려할 것을 결정하였다.
- IN2 이 공개초안에는 ISSB가 SASB 기준 지표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론이 제시된다. 또한, 이 공개초안에는 SASB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디지털 SASB 기준 택사노미의 수정 접근법도 포함된다.
- IN3 이 공개초안에 기술된 방법론의 제안된 적용 범위에는, 2022년 3월에 발표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IFRS S2 초안)에 포함된 모든 SASB 기준 지표가 제외된다. IFRS S2 초안은 SASB 기준의 기후 관련 지표에 대해 제안된 개정사항을 제시한다.

제안된 방법론 요약

- IN4 ISSB는 SASB 기준 내 기후 외 관련 지표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개선하더라도, SASB 기준의 구조, 완전성 및 의도는 유지될 것이다. 기업이 운영되는 관할권 또는 적용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GAAP)의 유형에 관계없이 SASB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법이 설계되었다.

IN5 제안된 방법론은 IFRS S2 초안의 부록B 및 관련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한 산업기반 기후 관련 공시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며, IFRS S2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된 방법론이다. 그러나 이 공개초안에 제안된 방법론 및 관련 ISSB의 심의는 IFRS S2 초안 내의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ISSB 논의와는 별개이다. IFRS S2 초안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ISSB는 향후 업무의 일환으로 IFRS S2 내 산업기반 공시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계속 고려할 것이다.

SASB 기준 택사노미 수정 요약

IN6 SASB 기준 택사노미는 SASB 기준을 적용할 때 공시된 정보에 디지털 태그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디지털 태깅을 통해 공시된 정보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이 보고한 정보를 더 쉽게 수집, 사용, 그리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IN7 SASB 기준 택사노미는 SASB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므로, SASB 기준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이를 SASB 기준 택사노미와 대응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방법론은 SASB 기준에 대한 개정과 일관되도록 SASB 기준 택사노미를 수정할 수 있게 한다.

공개초안에 적용 가능한 정규절차 조항

IN8 2022년 8월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과 IFRS재단이 통합된 이후, ISSB는 SASB 기준의 유지 및 개선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특정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는 경우, SASB 기준은 기업이 IFRS S1을 적용할 때 관련성이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침의 역할을 할 것이다.

IN9 IFRS재단에 SASB 기준의 유지 및 개선을 감독하기 위한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규절차가 없었으므로, IFRS재단 이사회의 정규절차 감독위원회(DPOC)는 2022년 10월 ISSB에 SASB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승인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정규절차지침서*, IASB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검토 과정, 그리고 최종 IFRS 해석위원회(IFRIC) 업데이트의 공표를 위한 IASB 승인 과정에서 착안한 이 개정 과정은 SASB 기준에 대해 제안된 공개초안이나 개정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할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IN10 또한 DPOC는 ISSB가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

된 방법론에 대해 협의한 후, 제안된 개정사항의 초안은 공개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IFRS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으며, 이는 공개 의견조회를 위한 목적으로 공개초안 내에 제안된 모든 개정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대신한다.

IN11 2023년 2월, DPOC는 SASB 기준을 개정할 때 SASB 기준 택사노미를 수정하기 위한 정규절차를 승인했다. 제안된 SASB 기준 택사노미 수정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발표하는 대신, ISSB는 이 공개초안 내에 제안된 택사노미 모델링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향후 일정

IN12 이 공개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ISSB는 다음을 수행할 예정이다.

- (1) 기후 외 관련 SASB 기준 지표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과 특정 지표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 (2) SASB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관할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그리고
- (3) 이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과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제안된 방법론과 SASB 기준에 대한 관련 개정사항을 개선

IN13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수렴된 의견을 고려해, SASB 기준에 대해 제안된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SASB 기준 택사노미의 수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다.

IN14 ISSB는 IFRS S1의 이행과 적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SASB 기준과 SASB 기준 택사노미에 대한 이러한 개정을 신속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ISSB는 이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특히 '의견조회를 위한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ISSB는 이 공개초안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요청하며, 의견이 다음의 특성을 지니면 더욱 유용합니다.

- (a) 의견조회 사항에 명시된 대로 답변
- (b) 관련된 문단을 명시
- (c) 명확한 근거를 포함
- (d) 만약 가능하다면, ISSB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포함

의견조회를 위한 질의사항

의견조회 사항 1 - 방법론의 목적

이 공개초안은 기후 외 관련 SASB 기준 지표에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지표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지표 개정 방법론을 설명합니다.

- (a) 문단 8이 의도된 개선사항의 범위와 제안된 방법론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b) 문단 8에 나열된 목적의 제약조건들(SASB 기준의 구조와 의도의 유지, 의사결정 유용성 및 비용 효율성)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c) 다른 목적(들) 또는 제약조건(들)이 제안된 방법론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귀하가 제안하는 대안 또는 다른 목적(들) 또는 제약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안된 방법론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치를 부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조회 사항 2 - 전반적 방법론

이 공개초안은 SASB 기준 지표에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이 포함된 경우, 국제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ASB 기준 개정에 대해 제안된 방법론을 설명합니다.

- (a) 제안된 방법론이 SASB 기준 지표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접근법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견조회 사항 3 - 개정 접근법

이 공개초안은 기후 외 관련 SASB 기준 지표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섯 가지 개정 접근법을 설명합니다. 이 방법론을 통해 개정된 모든 공시 주제, 지표 및 세부 프로토콜은, 이 다섯 가지 개정 접근법을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방법론은 개정 접근법①의 적용부터 시작하며, 개정 접근법①은 관련된 참조사항의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지된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를 사용합니다.

- (a)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을 (만약 식별가능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지된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b) 만약 개정 접근법①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남은 네 가지 개정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c) 특정 개정 접근법 또는 접근법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개정된 지표가 이를 적용함에 있어 작성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d) 상황별로 적용할 제안된 개정 접근법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에 동의합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제안하고자 하는 판단기준에 대한 변경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견조회 사항 4 - SASB 기준 택사노미 수정의 목적

이 공개초안은 SASB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SASB 기준 택사노미 수정 접근법을 설명합니다.

- (a) SASB 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SASB 기준 택사노미를 수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체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견조회 사항 5 - 향후 SASB 기준의 개선

이 공개초안은, SASB 기준 지표에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표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에 따라 SASB 기준 지표를 개정하는 좁은 범위의 개정의 첫 번째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후속 단계에서 ISSB는 SASB 기준의 의사결정 유용성을 개선하고, 작성자의 비용효과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국제적 목적적합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 (a) ISSB가 IFRS S1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SASB 기준을 개선하는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떠한 다른 방법, 고려사항 또는 구체적인 개정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b) ISSB가 SASB 기준의 향후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고려할 구체적인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십니까?

기한

ISSB는 2023년 8월 9일까지 제출된 모든 의견과 응답을 고려할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ISSB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개진을 선호합니다.

서베이: https://ifrs.qualtrics.com/jfe/form/SV_6o2bqaG22DiUTqu

ISSB는 다음의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접수된 의견서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귀하의 의견은 귀하가 비밀 유지를 요청하고, ISSB가 이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기록 및 게시됩니다. 비밀 유지 요청은 타당한 이유(예, 상업 기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과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밀 유지를 요청하려면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commentletters@ifrs.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 방법론

개요

- 1 70개 이상의 관할권에서 운영되는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선택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은, 77개의 산업기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기업이 식별하고 공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산업 설명, 공시 주제 그리고 관련 회계 지표가 포함된다. ISSB는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포함하여 SASB 기준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 2 SASB 기준은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FRS S1)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의 핵심 원천의 역할을 담당하며, 특정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부재한 경우, 기업이 목적적합하고 비교가능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3 현재 SASB 기준 지표를 지원하는 일부 지침은 다른 관할권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의, 용어 또는 관할권 특유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참조를 사용하고 있다.
- 4 이러한 과제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IFRS S2 초안)이 개발될 때 확인되었다. SASB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기후 관련 산업기반 공시를 다룬 IFRS S2 초안의 부록 B는 SASB 기준의 기후 관련 공시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개정사항을 제안하였다. ISSB는 IFRS S2가 공표될 때, IFRS S2의 내용과 SASB 기준의 기후 관련 산업별 공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대응되는 SASB 기준을 수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5 따라서 이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방법론은 IFRS S2를 공표할 때 개정되지 않는 SASB 기준 지표에 적용한다. 이러한 공시사항은 이 공개초안에서 '기후 외 관련 SASB 기준 지표'로 설명된다. 이러한 공시사항에는 대기 배출,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참여 및 인적 자본 관리와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가 포함된다.
- 6 SASB 기준 택사노미의 수정 범위는 이 공개초안과 관련된 SASB 기준의 개정 범위와 IFRS S2의 공표로 인해 발생하는 SASB 기준의 수정 범위와 일치할 것이다.

- 7 ISSB는 IFRS S2를 발행할 때, IFRS S2에 포함된 지표와 일관되게 관련된 SASB 기준의 지표를 수정함으로써, IFRS S2에 포함된 산업별 지침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 공개초안은 이외 SASB 기준 지표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ISSB가 제안하는 방법론을 설명한다. 이 방법론은 IFRS S2 초안 부록 B 산업별 지침에 포함된 기후 관련 SASB 기준 지표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는데 사용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다.
- 8 이 공개초안은 ISSB가 목표로 하는 활동의 일부로, 기업이 IFRS S1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SASB 기준을 참조할 때, 기업이 운영되는 위치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관할권에서 SASB 기준의 관련 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목적은 SASB 기준의 구조나 내용의 본래 의도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방법론은 개정사항에 일반목적재무보고 이 용자에 대한 SASB 기준의 의사결정 유용성이 유지되고, 작성자의 비용은 증가하지 않음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이미 SASB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SASB 기준이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개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동일한 공시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론은 SASB 기준의 지표를 모든 관할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방법론은 특정 관할권 특유의 SASB 기준의 언어를 수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정된 SASB 기준을 사용하는 기업은 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든 다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을 적용하든 SASB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 9 ISSB는 지표의 범위, 방법 또는 매개변수를 정의하기 위해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에 기반을 둔 기후 외 관련 SASB 기준 지표를 식별하였다. SASB 기준 지표에 대한 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 접근법의 우선순위 내림차순으로 진행된다.
- (1) 기준, 정의 또는 계산방법에 대해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참조사항으로 대체
 - (2) 기준, 정의 또는 계산과정에 대해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보다 일반화된 참조사항을 제공
 - (3)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작성자가 적용가능한 해당 관할권의 법률, 규정, 방법론 또는 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채택
 - (4) 국제 적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특정 관할권 밖에서 식별된 국제적으로 동등한 대상이 없는 경우 공시지표를 제거(제한된 경우에 한함)

- (5)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 본래 지표의 의도와 일치하면서도 공시 주제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련된 대체지표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관할권 특유의 지표를 제거하고 대체
- 10 이 방법론은 절차적 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SASB 기준 지표의 본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은 피하고 있다. 이 공개초안의 부록 A는 제안된 개정 접근법을 설명한다. 부록 B는 제안된 방법론이 적용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안된 각 개정 접근법을 사용한 적용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부록 C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산업의 대표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안된 방법론에 따라 SASB 기준이 어떻게 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 11 특정 지표의 복잡성에 따라, 관련된 세부 프로토콜에는 잠재적으로 다양한 출처를 참조하는 많은 용어와 정의, 계산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부록 C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개정 접근법은 지표의 세부 프로토콜 내에서 개별적이지만 다양한 관련 요소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작성자의 관할권에 관련된 법적 또는 규제 체계가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지되는 프레임워크(개정 접근법 1)를 적용가능한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정을 사용하는 것(개정 접근법 3)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인용할 수 있다. 종종, 제안된 개정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를 제공(개정 접근법 2)하면 적용가능한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정(개정 접근법 3)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프레임워크(개정 접근법 1)에 대한 참조사항이 보장된다. 이러한 정의된 용어는 작성자가 지표의 적용에 대한 문맥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12 이 방법론은 상당한 양의 내용에 대해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는 것과 IFRS S1이 적시에 이행 및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13 이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는 ISSB가 IFRS S2의 지침으로 포함한 산업기반 공시에 대한 잠재적인 추가 개선을 고려하기로 결정한 업무를 포함한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에 대한 더 광범위한 고려사항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SASB 기준 택사노미 수정

- 14 SASB 기준 택사노미 수정은 SASB 기준의 정보가 디지털 보고를 위해 포착되거나 '태그'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작성자가 SASB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한 정보를 레이블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태그는 SASB 기준의 개정을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할 수 있다.

- 15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과 일관되도록, ISSB는 SASB 기준 택사노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제안한다.
- (1) 필요한 경우, 문단 9의 (1)~(3)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SASB 기준의 제안된 개정사항과 일치하도록 택사노미 개념(디지털 태그)을 변경한다.
 - (2) 필요한 경우, 문단 9의 (4)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SASB 기준의 제안된 개정사항과 일치하도록 택사노미 개념을 제거한다.
 - (3) 필요한 경우, 문단 9의 (5)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SASB 기준의 제안된 개정사항과 일치하도록 택사노미 개념을 추가한다.
- 16 SASB 기준 택사노미가 SASB 기준의 모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될 때까지, ISSB는 온라인으로 기존 문구와 개정된 문구를 보여주는 SASB 기준의 변경 내용 표시(blacklined) 버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변경 내용 표시 버전은 기업이 개정된 SASB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SASB 기준 택사노미에 맵핑할 수 있게 한다.

향후 일정

- 17 이 공개초안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 동안, ISSB는 다음 업무를 예정하고 있다.
- (1) 기후 외 관련 SASB 기준 지표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과 특정 지표에 대한 제안된 지표 개정에 대해 논의
 - (2) SASB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관할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 (3)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며, 아웃리치를 하는 동안 제안된 방법론 및 관련한 SASB 기준 개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결정
- 18 ISSB는 제안된 방법론에 대해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사용하여 방법론, 이에 상응하는 SASB 기준의 개정, 그리고 잠재적인 SASB 기준 택사노미에 대한 개정을 안내할 것이다. ISSB의 목표는 IFRS S1 시행일 전에 이 업무와 관련된 SASB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 19 ISSB는 SASB 기준 택사노미의 구조와 설계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문단 14~15에 요약된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할 것이다.

부록 A

개정 접근법 상세

- A1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하지 않은 SASB 기준 지표를 식별한 결과, 이러한 지표는 SASB 기준의 1,000개의 지표 중 약 20%를 차지한다. 이러한 지표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선별적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된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 A2 문단 A3-A7에서는 방법론을 위해 개발된 다섯 가지 개정 접근법을 뒷받침하는 필수 개념을 설명한다.
- A3 개정 접근법 1: 만약 작성자가 영업하는 위치와 무관하게 작성자가 제공할 정보가 대체로 동일할 경우, 선호되는 방법론은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을 동등한 국제적인 참조사항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개정 방법론 1은 동등한 국제 참조사항을 식별할 수 있고, 식별된 국제 참조사항이 관련 공시 주제의 성과를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SASB 기준 지표는 각 산업별 공시 주제 성과의 관련 측면을 파악한다. 동등한 국제 참조사항은 대체되는 본래의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과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공시 주제의 성과를 포착한다. 국제 참조사항이란,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전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정의, 계산방법으로서 다음에 해당한다.
- (1) 대부분의 관할권이 준수하는 기준, 정의 또는 계산 방법; 그리고
 - (2) 일반적으로 우세하게 사용되는 국제 기준, 정의 또는 계산 방법과 특정 관할권의 동등한 대상이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은 기준, 정의 또는 계산 방법
- A4 개정 방법론 2: 적절한 국제 참조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으로 선호되는 방법론은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로 대체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정 방법론 1 대신 개정 방법론 2를 적용한다.
- (1)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정의 또는 계산 방법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
 - (2) 기본 개념이 널리 이해되어 특정한 정의나 계산 방법이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작성자의 작성에 방해가 되지 않고,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을 대체해 원래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재가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 (3) 지표의 세부 프로토콜에 특정한 일관된 정의, 기준, 또는 계산 방법이 추가되면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 A5 개정 접근법 3: 만약 지표가 너무 복잡한 개념이나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어, 유의적인 양의 정보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 개정 접근법2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으로 선호되는 방법은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적용가능한 관할권의 법률, 규정, 또는 정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정 방법론3을 적용한다.
- (1)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정의 또는 계산 방법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 (2) 다른 관할권의 기준, 정의 또는 계산 방법이 대체되는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과 대응되는 경우
- A6 개정 접근법 4: 만약 개정 접근법 1 - 3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으로 선호되는 접근법은 공시 주제가 불완전해지게 하지 않으면서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과 연관된 지표를 제거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 주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지표가 있다면, 해당 지표는 제거될 것이다.
- A7 개정 접근법 5: 만약 개정 접근법 4가 제안되었거나 개정 접근법 1-3의 적용에 따라 하위 지표가 제거되었다면,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유사한 대체 지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제거된 지표 또는 하위 지표는 연관된 공시 주제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표 세트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존과는 다르지만 일관된 지표로 대체될 것이다.
- A8 부록B에서 이러한 개정 접근법의 적용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부록C에서 이러한 개정 접근법의 산업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A9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배경을 설명하자면, SASB 기준 지표 중 약 200개가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사항을 평가하는데 유의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접근법이 적용되었다.
- (1) 제안된 지표 개정안의 50% 이상이 개정 접근법 2와 3을 복합적으로 적용(35%)하거나, 개정 접근법 1을 접근법 2 또는 3을 복합적으로 적용(17%);
 - (2) 제안된 지표 개정안의 1/3은 개정 접근법 2를 개별적으로 적용(21%)하거나 개정 접근법 3을 개별적으로 적용(12%);
 - (3) 제안된 지표 개정안의 1/3이 헬스케어(18%)와 금융(14%) 산업에 집중됨;
 - (4) 개정 접근법 4를 적용하여 잠재적 제거 대상으로 열여섯 가지의 지표가 식별되었으며, 이 중 일곱 가지는 헬스케어 부문(주로 헬스케어 제공 산업)에 있으며, 세 가지는 운송 부문에 있고, 소비재,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각각에 두 가지씩 존재; 그리고

- (5) 개정 접근법 4의 적용에 따라 제거할 것이 제안된 3개의 지표를 대체하고, 개정 접근법 1 - 3에 따라 제거할 것이 제안된 국제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하위 지표의 제거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 접근법 5를 적용하여 새로운 지표 다섯 가지를 개발

부록 B

적용사례

이 부록은 부록A에서 설명하는 다섯 가지 개정 접근법 별 사례를 제공한다.

개정 접근법 1의 사례 -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정의·계산방법을 참조하도록 SASB 기준 개정

- B1 건축자재 SASB 기준의 지표 EM-CM-320a.2는 기업의 현재 종업원 또는 이전 종업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규폐증(silicosis) 사례 건수를 측정한다. 이 지표에 대한 측정 프로토콜에서는 미국에만 적용되는 미국 연방 규정 코드 (US 29 CFR 1910.1053 부록 B)에 따라 규폐증을 정의한다.
- B2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질병분류(ICD)는 임상적으로 진단된 규폐증을 규진(silica dust) 흡입으로 인한 진폐증으로 정의하며, WHO 분류에서는 ICD-10 J62.8로 지정한다. ICD는 질병 기록, 보고 및 감독을 위한 공통 국제 기준을 제공한다. ICD는 43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모든 WHO 회원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 B3 제안된 방법론에 따르면, 규폐증을 정의하는 WHO의 ICD 참조사항은 이전의 미국 연방 규정 코드 참조사항을 대체할 것이다.

표 1 -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접근법 1

건축자재 SASB 기준	제안된 개정안
EM-CM-320a.2. 보고된 규폐증(silicosis) 사례 건수	EM-CM-320a.2. 보고된 규폐증(silicosis) 사례 건수
1 기업은 자사의 현재 종업원 또는 이전 종업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규폐증 사례 건수를 공시해야 한다.	1 기업은 자사의 현재 종업원 또는 이전 종업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규폐증 사례 건수를 공시해야 한다.
1.1 공시 범위에는 만성, 급성 또는 가중 규폐증 사례를 포함한다.	1.1 규폐증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에 따르며, 규사를 함유한 먼지로 인한 진폐증을 의미한다.
1.2 기업은 U.S. 29 CFR 1910.1053 부록 B의 만성, 급성 또는 가중 규폐증에 대한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1.2 공시 범위는 임상적으로 진단된 만성, 급성 또는 가속성 규폐증을 포함한다.

개정 접근법 2의 사례 - 일반화된 정의를 제공하여 SASB 기준 개정

- B4 전자상거래 SASB 기준의 지표 CG-EC-330a.4는 H-1B 비자 보유자인 기술직 직원의 비율을 측정하며, 이는 미국 이민법에 의해서만 적용되는 분류이다. 또한, 미국 노동 통계국의 표준직업분류 시스템은 기술직 직원으로 분류되는 직원의 유형을 정의한다.
- B5 개정 접근법 2를 적용하면, 'H-1B 비자 소지자'에 대한 참조사항이 '외국 국적자'로 개정되고 기술직 직원의 정의가 일반화될 것이다.

표 2 -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접근법 2

전자상거래 SASB 기준	제안된 개정안
CG-EC-330a.4. H-1B 비자를 소지한 기술직 직원의 비율 ...	CG-EC-330a.4. 외국 국적자인 기술직 직원의 비율 ...
1.1 기술직 직원은 미국 노동 통계국 (BLS)의 표준직업분류(SOC) 시스템의 15-0000 그룹(컴퓨터 및 수학 직업) 또는 17-0000 그룹(건축 및 공학 직업)으로 분류된 직원을 포함한다.	1.1 비율은 외국 국적자인 기술직 직원의 수를 기업의 기술직 직원 총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1.2 비율은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기술직 직원 수를 기술직 직원의 총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해야 한다.	1.2 기술직 직원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수학, 건축 및 엔지니어링 직업으로 분류되는 매우 숙련되거나 고도의 자격을 갖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정의된다.

개정 접근법 3의 사례 - 관할권의 적용가능한 참조사항을 참조하도록 SASB 기준 개정

- B6 폐기물 관리 SASB 기준의 지표 IF-WM-150a.2는 '지하수 보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매립지 방류'와 관련하여 기업이 시행하는 '시정 조치'의 수를 측정한다. IF-WM-150a.2의 시정 조치와 관련된 요소를 구성하는 미국 연방 규제는 미국에만 적용된다.
- B7 이 시정조치와 유사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는 식별되지 않았다. 개정 접근법 3을 적용하면, IF-WM-150a.2는 기업이 '적용 가능한 관할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정의된 일관된 용어에 기반하여 공시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도록 개정될 것이다.

B8 이 접근법은 다양한 규제 체제에서 운영되는 기업 간의 관할권 간 비교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관할권 내 비교 가능성은 유지될 수 있다. 개정 접근법 3을 적용하면,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적용 가능한 관할법이나 규정도 일반적으로 공시할 것이다.

표 3 -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접근법 3

폐기물 관리 SASB 기준	제안된 개정안
IF-WM-150a.2. 매립지 방류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시정 조치의 수 ...	IF-WM-150a.2. 매립지 방류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시정 조치의 수 ...
1.1 시정조치는 U.S. 40 CFR Part 258.50 Subpart E-Ground- Water Monitoring and Corrective Action 상의 지하수 보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배경수준(U.S. 40 CFR Part 258의 부록 I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에서 검출된 성분의 매립지 방류를 통제 및 정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1 시정 조치에는 해당 관할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정의된 지하수 보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배경수준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에서 검출된 성분의 매립지 방류를 통제 및 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2 공시 범위에는 U.S. 40 CFR Part 258.50 Subpart E-Ground- Water Monitoring and Corrective Action for municipal solid waste landfills에 정의된 부제 C 매립지에 대한 시정 조치나, U.S. 40 CFR Part 264.100-Corrective Action Program에 정의된 부제 D 매립지에 대한 시정조치가 포함된다.	2 공시 범위에는 활성 매립지와 폐쇄 매립지 모두에 대해 시행된 시정 조치가 포함된다.
3 공시 범위에는 활성 매립지 및 폐쇄 매립지에 대해 시행된 시정 조치가 포함된다.	3 기업은 시정조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적용가능한 관할 법률이나 규정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접근법 4의 사례 - SASB 기준에서 지표를 삭제

- B9 *바이오기술 및 제약* SASB 기준의 지표 HC-BP-240b.1은 승인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출시를 특정 기간 동안 지연시키기 위한 지불금 또는 준비금과 관련된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 소송 합의 건수를 측정한다. ANDA 절차는 미국에서 제네릭 의약품 판매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약 회사가 따르는 절차이다. 미국 연방법은 1984년 「의약품 가격 경쟁 및 특허 기간 복원법(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해치-왁스만법 개정본(Hatch-Waxman Amendments)”)의 공법 98-417」에 따라 ANDA 절차 및 관련 소송의 매개 변수를 관리한다.
- B10 ANDA에 해당하는 국제적 동등한 대상은 식별되지 않았다. ISSB 직원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및 남미의 非 미연방 관할권을 조사한 결과, ANDA 절차나 관련 소송과 유사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의약품 판매 및 유통은 다양한 관할권별 헬스케어 모형에 의해 관리된다.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 및 이들의 국내 의약품 유통과의 관계도 관할권에 따라 유의적으로 다르다.
- B11 조사에 따르면 HC-BP-240b.1의 기존 의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바이오기술 및 제약* SASB 기준의 가격적정성 및 가격책정 공시 주제의 다른 두 가지 지표를 일부 수정하면 해당 공시 주제의 완전성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 개정 접근법 4를 적용하면 HC-BP-240b.1은 삭제되고, 대체되지 않는다.

개정 접근법 5의 사례 - SASB 기준에서 지표 삭제 및 대체

- B12 *항공 운송 및 물류* SASB 기준의 회계 지표 TR-AF-430a.1는 사전에 설정된 안전 점수 시스템 기준점을 초과하는 운송업체의 비율을 측정한다. TR-AF-430a.1은 미국 연방운송회사안전청(FMCSA)의 행동분석 및 안전개선 범주(BASIC)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는 미국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시스템에 의존하며, 미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링된다(BASIC 시스템을 참조하는 다른 SASB 기준 지표는 표 C9 참조).
- B13 FMCSA의 안전 측정 시스템은 광범위한 미국 운송 회사 데이터를 포착하고 맞춤형 데이터 시스템에서 BASIC 백분위수를 계산하여 운송 회사의 안전

성능 문제를 강조하고 가능한 미국 연방 규제 기관의 개입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 B14 BASIC 시스템은 미국 운송 업체의 안전 데이터만 검사하고, 미국 기록 자료만을 기반으로 한 공식을 사용하여 운송 업체의 안전을 평가한다. BASIC 시스템 및 안전 측정 데이터 시스템과 동등한 글로벌 데이터 시스템은 일부 개발 중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식별되지 않았다.
- B15 *항공 운송 및 물류 SASB* 기준의 '공급망 관리' 공시 주제에 있는 다른 지표들은 TR-AF-430a.1에 내재된 개념을 사용하여 기업 성과를 포착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다.
- B16 개정 접근법 5를 적용하면 TR-AF-430a.1은 삭제되고, 대체될 것이다. SASB 기준의 유사한 지표에 사용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질적 지표가 계약 운송 안전과 관련된 사업 중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기업의 정책과 전략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될 것이다.

부록 C

SASB 기준 산업별 개정 예시

이 부록은 제안된 방법론을 사용해 2개의 SASB 기준이 어떻게 개정될 수 있는지 예시를 제공한다.

- C1 이 부록에는 문단9에 요약된 개정 접근법을 사용하여 두 산업에 대한 SASB 기준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부록에는 선택된 개정 접근법의 근거를 요약한 보완 설명(supporting commentary)이 포함되어 있다.
- C2 개정사항은 마크업(markup)으로 제공되며, 삭제된 부분에는 ~~카운트에 줄어~~ ~~크어져~~ ~~있고~~, 추가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된다.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예시에서는 SASB 기준의 내용을 IFRS재단 스타일 가이드(Style Guide)에 일치시키거나 측정단위에 있어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를 채택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부 사소한 편집 사항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예: 'meters'를 'metres'로 변경, 또는 '피트'를 '미터'로 변경).
- C3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이 부록에는 각 SASB 기준의 시작 부분에 제공되는 요약표와 유사한 표가 포함된다. 이 요약표에는 해당 산업에 대한 SASB 기준의 전체 공시 주제 및 관련 지표가 나열되어 있다. 각 산업별 요약표 하단에 제공되는 지표 및 상세한 세부 프로토콜은, 제안된 방법론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을 포함하는, 기후 외 SASB 기준 지표로서 식별되었다.

예시 1

- C4 전력 및 발전 산업(IF-EU)에 대한 SASB 기준은 개정 접근법을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한 예시이다. 이 산업 예시에는 다른 산업 SASB 기준에서 발견되는 관할권 특유의 참조사항으로 이루어진 '자주 사용되는 지표 (frequently occurring metric)'에 대해 제안된 개정사항과 드물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 접근법 5의 사용이 포함된다. 이 산업 예시는 관할국 특유의 참조사항으로 이루어진 SASB 기준 지표 및 세부 프로토콜의 국제 적용 가능성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보여준다.

지속가능성 공시 주제 및 화계 지표

표C1. 지속가능성 공시 주제 및 회계 지표

주제	회계 지표	범주	측정 단위	코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자원 계획	(1) 글로벌 Scope 1 배출 총량, (2) 배출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비율, (3) 배출량 보고 규정상 적용되는 비율	정량적	이산화탄소 환산 톤 CO ₂ -e(t), 백분율(%)	IF-EU-110a.1
	전력 공급과 관련된 온실가스(GHG) 배출량	정량적	이산화탄소 환산 톤 CO ₂ -e(t)	IF-EU-110a.2
	Scope 1 배출량 관리를 위한 장단기 전략,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대비 성과 분석에 대한 논의	논의 및 분석	해당없음	IF-EU-110a.3
대기질	다음 오염물질의 대기 배출량: (1) NO _x (질소산화물) (N ₂ O(아산화질소) 제외), (2) SO _x (황산화물), (3) 미세먼지(PM ₁₀), (4) 납(Pb), (5) 수은(Hg), 인구밀집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의 각 배출량 비율	정량적	톤(t), 백분율(%)	IF-EU-120a.1
물 관리	(1) 총취수량, (2) 총물 소비량,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거나 극히 높은 지역에서의 각 비율	정량적	천제곱미터(m ³), 백분율(%)	IF-EU-140a.1
	수량 및/또는 수질 허가, 기준 및 규정과 관련된 위반 건수	정량적	수	IF-EU-140a.2
	물 관리 위험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및 관행에 대한 논의	논의 및 분석	해당없음	IF-EU-140a.3

주제	회계 지표	범주	측정 단위	코드
석탄재 관리	석탄연소부산물(Coal Combustion Products, CCP) 잔여물(Coal Combustion Residuals, CCR) 발생량, 재활용 비율	정량적	톤(t), 백분율(%)	IF-EU-150a.1
	유해 잠재성 분류 및 구조건전성 평가에 따라 분류된 석탄연소잔여물(CCR) 저류지 총수	정량적	수	IF-EU-150a.2
	활성화 및 비활성화 작업을 위한 석탄연소부산물(CCPs)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논의	논의 및 분석	해당없음	IF-EU-150a.3
에너지 가격적정성	(1) 주택용(residential), (2) 상업용(commercial), (3) 산업용(industrial) 고객의 평균 소매 전기요금	정량적	요금	IF-EU-240a.1
	월별 공급된 (1) 500kWh 및 (2) 1,000kWh 전력에 대한 주택용 고객의 통상적인 월 전기료	정량적	보고통화	IF-EU-240a.2
	미납으로 인한 주택용 고객 단전 건수, 30일 이내 전력이 재공급된 비율	정량적	수, 백분율(%)	IF-EU-240a.3
	서비스 지역의 경제상황을 포함한 외부 요소가 고객 전력 가격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논의 및 분석	해당없음	IF-EU-240a.4
전-종업원 (workforce)	(a) 직접고용 종업원(direct employee) 및 (b) 간접고용	정량적	비율	IF-EU-320a.1

주제	회계 지표	범주	측정 단위	코드
보건 및 안전	종업원(contract employee)의 (1) 총기록 재해율(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TRIR), (2) 사망률, (3) 아차 사고 빈도율(Near Miss Frequency Rate, NMFR)			
최종 사용 효율 및 수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통해 공급되는 전력부하 비율	정량적	메가와트시 (MWh) 별 백분율(%)	IF-EU-420a.2
	시장별 효율 조치(efficiency measures)를 통한 고객 전력 절감	정량적	메가와트시 (MWh)	IF-EU-420a.3
원자력 안전 및 비상 관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조치 매트릭스열 (Action Matrix Column)가장 최신의 독립적인 안전 검토 결과에 따라 분류된 총원자력 발전소 수	정량적	수	IF-EU-540a.1
	원자력 안전 및 비상 대비 관리를 위한 노력의 설명	논의 및 분석	해당없음	IF-EU-540a.2
그리드 복원력	물리적 및/또는 사이버보안 기준 또는 규정의 위반 건수	정량적	수	IF-EU-550a.1
	주요 사건일이 포함된 (1) 호당정전시간(System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 SAIDI), (2) 호당정전횟수(System Average Interruption Frequency Index, SAIFI), (3) 정전고객 평균정전시간 (Customer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 CAIDI)	정량적	분 수	IF-EU-550a.2

석탄재 관리

IF-EU-150a.1. ~~석탄연소부산물(Coal Combustion Products, CCP)잔여물(Coal Combustion Residuals, CCR) 발생량, 재활용 비율~~

1 기업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석탄연소부산물(CCP)잔여물(CCR)량을~~ 톤 단위로 공시해야 한다.

1.1 ~~CCP에는 주로 석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이 애시(fly ash), 바닥재(bottom ash), 유동층 연소재(fluidized-bed combustion ash), 배연탈황 소재(flue gas desulfurization material)가 포함된다.~~

~~CCR 소재는 U.S. 40 CFR 257.53에 따라 전력회사 및 독립발전사업자가 발전을 목적으로 석탄을 연소하여 발생시키는 부산재, 바닥재, 보일러 광재, 연도 가스의 탈황용 소재로 정의된다.~~

2 기업은 재활용된 ~~CCP/CCR 소재의~~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2.1 ~~기업은 적용가능한 관할국별 정의에 따라 CCP를 정의해야 한다.~~

~~CCR 소재는 U.S. 40 CFR 257.53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재활용된다.~~

2.1.1 ~~CCR 소재는 반드시 기능상 효익을 제공하여야 한다(예: 콘크리트에 CCR을 섞으면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높아지고, 토양개량제로 사용된 CCR은 토양의 산도를 조정하여 식물 성장을 촉진한다).~~

2.1.2 ~~CCR 소재는 반드시 원재료의 사용을 대체하여 해당 소재가 없었다면 추출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천연자원을 보존하여야 한다(예: 노반에 사용된 CCR 소재는 채석된 골재 또는 기타 산업 소재를 대체한다).~~

2.1.3 ~~CCR 소재의 사용은 관련 제품 사양, 규제 기준, 또는 설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CCR 소재를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예: CCR 소재를 현장에서 활용할 때는 토양 특성 및/또는 작물 수확량 개선에 필요한 과학적으로 인정된 양을 초과 사용하지 않는다).~~

2.2 CCP가 새로운 소재 및 제품으로 변환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2.3 비율은 CCPCER의 재사용 또는 재생된 무게량, 기업이 (처리 또는 공정을 통해) 재활용한 무게량, 추가 재활용을 위하여 외부로 보낸 무게량의 합을 사업장에서 발생한 CCPCER의 총무게량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해야 한다.

2.4 기업은 재활용된 CCP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적용 가능한 관할국별 법률 또는 규정을 공시해야 한다.

표 C2- IF-EU-150a.1 지표에 제안된 개정 접근법

개정 접근법 1, 3 복합 적용

- (1) 국제적으로 인지되는 석탄재의 정의를 참조하여 지표를 개정하고,
- (2) 적용 가능한 관할국별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지표를 개정

- (1) '석탄연소부산물'(CCP)은 주요 산업 용어이다. 이 용어는 다양한 관할국의 주요 석탄재 관리기관들이 포함된 세계석탄연소부산물네트워크(World Wide Coal Combustion Products Network)에서 사용된다.
- (2) CCP 재활용에 대한 미국 규제상의 정의와 다른 관할국별 정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CCP 재활용을 정의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관할국별 요구사항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IF-EU-150a.2. 유해 잠재성 분류 및 구조건전성 평가에 따라 분류된 석탄연소잔여물(CCR) 저류지 총수~~

~~1 기업은 석탄연소잔여물(CCR) 저류지 총수를 공시해야 한다.~~

~~1.1 CCR 저류지는 CCR을 포함하고 있는 지표 저류지로 정의된다.~~

~~1.1.1 지표 저류지는 U.S. 40 CFR 257.2에 따라 액체 폐기물 또는 유리수가 함유된 폐기물의 적치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입정은 아닌,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인 자연적인 지형 함몰, 인간이 만든 굴착, 또는 주로 흡으로 형성된(인공 소재가 둘러져 있다 하더라도) 굴착지로 정의된다.~~

~~1.2 공시 범위는 미사용 및/또는 폐쇄되었으나 기업이 감독 및/또는 재정적 책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소유 및/또는 운영하는 CCR 저류지를 포함한다.~~

~~2 기업은 CCR 저류지 수위 유해 잠재성 분류 및 구조건전성 평가 등급에서 각 저류지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2.1 잠재위험 분류는 댐의 붕괴로 인한 인명 손실 또는 피해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분류에는 고잠재위험, 보통잠재위험, 저잠재위험, 저잠재위험 미만 및 침식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The U.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댐 안전을 위한 연방 지침: 댐의 잠재위험 분류체계(Federal Guidelines for Dam Safety: Hazard Potential Classification System for Dams)(침식 제외)」와 일치한다.~~

~~2.1.1 고잠재위험은 고장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손실 가능성을 지닌 댐으로 정의된다.~~

~~2.1.2 보통잠재위험은 고장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손실 가능성은 없으나 경제적 손실, 환경 피해, 라이프라인 시설 중단, 또는 기타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댐으로 정의된다.~~

~~2.1.3 저잠재위험은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손실 가능성이 없고 경제적 및/또는 환경적 손실이 낮은 정도의 댐으로 정의된다.~~

~~2.1.4 저잠재위험 미만은 고잠재위험, 보통잠재위험, 또는 저잠재위험이 없는 댐으로 정의된다.~~

~~2.1.5 침식은 US 40 CFR 257 및 261에 따라 자연 지표면의 완전한 하부층에 있고, 인접한 자연 지표면보다 낮은 지층에 CCR을 적치하고 있어 댐의 어떤 부분도 구성하지 않는 CCR 지표 저류지로 정의된다. 잠재위험 분류는 댐, 굴착된 지표 저류지, 또는 기타 수밀구조의 고장 및 이러한 고장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점진적인 부정적 영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침식된 CCR 지표 저류지는 잠재위험 분류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2.2 구조건전성 등급은 해당 하중 상황(정지, 수압, 지진)에서의 댐의 기대 성능을 정의하며 등급에는 만족, 보통, 나쁨, 미달, 해당 없음이 포함된다.~~

~~2.2.1 만족은 모든 필수 하중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성능이 예상되고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안전 결함이 있다고 인식되지 않는 댐으로 정의된다.~~

~~2.2.2 보통은 모든 필수 하중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성능이 예상되나 사소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정조치 및/또는 이차적 연구 또는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댐으로 정의된다.~~

~~2.2.3 나쁨은 필수 하중 상황에서 안전 결함이 인식되고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추가 중요 연구 또는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댐으로 정의된다.~~

~~2.2.4 미달은 결함이 인식되어 즉각적 또는 긴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댐으로 정의된다.~~

~~2.2.5 CCR 지표 저류지는 U.S. 40 CFR 257.73에 따라 5피트 이상의 높이 및 20 에이커피트 이상의 저장 부피, 또는 20피트 이상의 높이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국가, 주, 지역, 또는 내부 평가에서 규제당국의 판단보다 잠재위험 및/또는 구조건전성의 영향 및/또는 고장 위험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 기업은 더 보수적인 (즉, 더 높은 위험) 분류 및/또는 등급을 공시해야 한다.~~

~~4 CCR 저류지의 유해 잠재성 분류 및 구조건전성 등급 규정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위에서 정의된 분류 및 등급과 다를 경우, 기업은 해당 규정 또는 자체개발 평가에 근거한 잠재위험 분류 및 구조건전성 등급을 공시할 수 있다.~~

~~5 기업은 다음과 같은 표 양식으로 CCR 저류지를 요약 및 공시할 수 있다.~~

	저잠재위험 미만	저잠재위험	보통잠재위험	고잠재위험	침식
만족					
보통					
나쁨					
미달					
해당 없음					

IF-EU-150a.3. 활성화 및 비활성화 작업을 위한 석탄연소부산물(CCP)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논의

1 기업은 석탄연소부산물(CCP) 관리 전략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1.1 공시 범위에는 기업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작업을 위한 정책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1.2 CCP에는 주로 석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이 애시(fly ash), 바닥재(bottom ash), 유동층 연소재(fluidized-bed combustion ash), 배연탈황 소재(flue gas desulfurization material)가 포함된다.

2 기업은 기업에게 적용되는 지역 관할국에서 요구하는 정책 및 절차와 자사의 정책 및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1 기업은 자사의 정책 및 절차가 지역 관할국의 요구사항을 상회하는지 여부와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2.2 기업은 정책 및 절차가 지역별로 어떻게 상이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3 기업은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CCP 관리에 대한 접근법을 설명해야 한다:

3.1 공시 범위에는 기업의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3.1.1 CCP와 관련된 잠재적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접근법

3.1.2 CCP 폐기물 예방(waste avoidance) 관련 정책 및 절차

3.1.3 경영 전략으로서의 CCP 재활용, 재사용, 및 용도 변경의 식별, 평가 및 적용에 대한 접근법

3.1.4 CCP 처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

3.1.5 CCP의 잘못된 취급과 연관된 사고의 환경적 또는 사회적 영향 해소

(remediation)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

3.1.6 CCP 처리시설의 폐쇄에 대한 접근법

4 기업은 CCP 관리에 대한 노력이 사업 파트너(예: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 간에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5 기업은 자사의 CCP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준수 및 적합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표 C3- IF-EU-150a.2 및 IF-EU-150a.3 지표에 제안된 개정 접근법

<p>개정 접근법 5</p> <p>(1) 석탄연소잔여물(CCR) 저류지 정량 지표를 삭제하고, (2) 석탄연소부산물(CCP)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성 지표로 대체</p> <p>(1) 석탄재 처리에 대한 규제 요구사항은 거의 완전한 재활용에서 건조 매립 및 매립회(pond ash)에 이르기까지 관할국별로 상당히 상이하다. 따라서 모든 폐기물 관리 기법에 대해 공통적인 국제 정량 단위를 설계하는 것은 어렵다.</p> <p>(2) 공시 주제의 완전성에 대한 잠재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석탄재 처리와 관련된 환경적 영향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및 절차를 공개하는 정성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p>
--

전 종업원(workforce) 보건 및 안전

IF-EU-320a.1. (a) 직접고용 종업원(direct employee) 및 (b) 간접고용 종업원(contract employee)의 (1) 총기록 재해율(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TRIR), (2) 사망률, (3) 아차사고 빈도율(Near Miss Frequency Rate, NMFR)

1 기업은 업무 관련 재해 및 질병에 대하여 총기록 재해율(TRIR)을 공시해야 한다.

1.1 상해 또는 질병이 사망, 작업손실일, 작업 제한 또는 전직, 응급처치 이외의 의학적 치료 또는 의식상실을 초래하는 경우, 기록대상 재해로 간주된다. 또한, 의사 또는 면허를 가진 전문 의료인의 진단을 받은 심각한 상해 또는 질병은 사망, 작업손실일, 작업 제한 또는 전직, 응급처치 이외의 의학적 치료 또는 의식상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기록대상 사고로 간주된다. 이 정의는 U.S. 29 CFR 1904.7에 따른다.

1.1.1 응급처치는 정규 의료 지원이 제공되기 전에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긴급 조치 또는 치료로 정의된다.

1.1.2 기업은 기록대상 재해와 응급처치의 정의에 적용 가능한 관할국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2 ~~미국 산업안전보건청(The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OSHA Forms 300, 300A, 301에 관한 지침(guidance for OSHA Forms 300, 300A, and 301)」에서 상해 또는 질병이 기록대상 재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제공한다.~~

2 기업은 업무상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공시해야 한다.

3 기업은 업무상 아차사고로 인한 아차사고 빈도율(NMFR)을 공시해야 한다.

3.1 아차사고는 기록대상의 부상, 질병, 신체적 상해 또는 환경상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있었던 계획되지 않거나 통제되지 않은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정의된다.

~~아차사고는 재산 또는 환경상의 손해 또는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손해 또는 신체적 상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

~~있을 계획되지 않은 사건으로 정의된다.~~

~~3.2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The U.S. National Safety Council, NSC)는 “아차사고 보고 체계(Near Miss Reporting Systems)” 등 아차사고 보고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3.3 기업은 아차사고의 분류, 식별, 보고 절차를 공시할 수 있다.~~

~~4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통계 수치 × 200,000) / 보고기간의 모든 종업원의 총근로시간~~

~~4.1 비율 계산에서 200,000은 연간 50주 동안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100명의 상근 직 종업원이 연간 제공할 수 있는 총시간을 나타낸다.~~

~~미국 노동통계국(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은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 재해율 계산법(How to Compute a Firm’s Incidence Rate for Safety Management)” 및 “재해율 계산기 및 비교 도구(Incidence Rate Calculator and Comparison Tool)”에서 비율 계산에 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5 공시 범위는 업무상 재해만을 포함한다.~~

~~5.1 업무상 재해는 업무 환경에서의 사건이나 노출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을 의미한다.~~

~~Forms 300, 300A, 301에 관한 OSHA 지침은 재해의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을 비롯하여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였으나 업무 관련성이 없어 면제되는 재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5.2 업무 환경은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거나 고용 조건에 따라 존재하는 사업장 및 기타 장소이다.~~

~~5.3 업무 환경에는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종업원이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자재도 포함된다.~~

~~5.4 종업원이 출장 상태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해당 직원이 상해 또는 질병 발생 시점에 고용주의 이익을 위한 업무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

5.5 업무상 재해는 이전에 기록된 상해 또는 질병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례여야 한다.

6 기업은 다음 범주별 종업원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6.1 직접고용 종업원은 상근직, 단시간 근무자(short service)¹⁾, 비상근직, 임원, 노무직(labour), 연봉제, 계절제(seasonal), 이주(migrant) 또는 시간제 종업원과 같은 고용 유형과 관계없이 기업 급여 지급 대상자로 정의된다.

6.2 간접고용 종업원은 기업의 급여 지급 대상자는 아니나 기업의 일일 감독을 받는 종업원으로 정의되며, 독립 계약자 및 제3자(예: 임시직 취업 알선소 및 노동중개인)를 통해 고용된 개인을 포함한다.

7 공시 범위에는 종업원 소재지 및또는 상근직, 비상근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임원, 노무직, 연봉제, 시간제 또는 계절제 등의 고용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이 포함된다.

표 C4- IF-EU-320a.1 지표에 제안된 개정 접근법

<p>개정 접근법 2, 3 복합 적용</p> <p>(1) 지표의 범위 및 용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여 지표를 개정하고,</p> <p>(2) 적용 가능한 관할국별 정의를 참조하여 지표를 개정</p> <p>(1) 지표의 핵심 용어를 지표의 세부 프로토콜 내에서 정의함으로써 미국 산업안전보건청(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참조를 제거하고, 공시에 포함되는 종업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해당 종업원의 분류를 SASB 기준서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할 것을 권고한다.</p> <p>(2) 기록대상 재해 및 응급처치에 대해 제안된 정의는 관할국별 정의(예: 다른 작업손실일 또는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조치)와 정확하게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작성자의 규정 준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보고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복잡성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기록대상 재해 및 응급처치에 적용 가능한 관할국별 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p> <p>참고: 본 지표는 SASB 기준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표로, 이와 유사한 형태가 다른</p>

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단시간근로자'와는 별개의 용어

23개 산업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다(표 C6 참조). 이런 다른 산업 지표들도 SASB 기준 전반의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IF-EU-320a.1에 제안된 개정과 유사하게 개정될 것이다.

예시 2

C5 도로 운송 산업(TR-RO)은 예시 1의 전력 및 발전 산업(IF-EU)과 같이 개정 접근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수정되는 산업의 또 다른 예시이다. TR-RO 및 IF-EU의 예시는 SASB 기준에 자주 등장하는 지표들이 어떻게 산업별로 다르게 표현되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포착하는지 보여준다. 일반적인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지표에 대해 제안된 개정사항은 유사한 지표를 가진 다른 SASB 기준 산업에도 반영될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주제 및 회계 지표

표 C5. 지속가능성 공시 주제 및 회계 지표

주제	회계 지표	범주	측정 단위	코드
온실가스 배출량	글로벌 Scope 1 배출 총량	정량적	이산화탄소 환산 톤 CO ₂ -e(t)	TR-RO-110a.1
	Scope 1 배출량 관리를 위한 장단기 전략,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대비 성과 분석에 대한 논의	논의 및 분석	해당없음	TR-RO-110a.2
	(1) 총연료 소비량, (2) 천연가스 비율, (3) 재생가능 비율	정량적	기가줄 (GJ), 백분율 (%)	TR-RO-110a.3
대기질	다음 오염물질의 대기 배출량: (1) NO _x (질소산화물) (N ₂ O(아산화질소) 제외), (2) SO _x (황산화물),	정량적	톤(t)	TR-RO-120a.1

주제	회계 지표	범주	측정 단위	코드
	(3) 미세먼지(PM ₁₀)			
운전자- 근무-조건 전 종업원 (workforce) 조건, 보건 및 안전	(a) 직접고용 종업원(direct employee) 및 (b)간접고용 종업원(contract employee) 의 (1) 총기록 재해율(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TRIR) 및 (2) 사망률	정량적	비율	TR-RO-320a.1
	모든 종업원의 (1) 자발적 이직률, (2) 비자발적 이직률	정량적	비율	TR-RO-320a.2
	운전자 건강 위험 관리를 위한 장단기 접근법에 대한 설명	논의 및 분석	비율	TR-RO-320a.3
사고 및 안전 관리	도로 운송사고(incident) 및 재해(incident) 건수	정량적	수	TR-RO-540a.1
	(1) 안전하지 못한 운행, (2) 운행 시간 준수, (3) 운전자 신체 건강, (4) 통제 물질/알코올, (5) 차량 유지관리, 및 (6) 유해 물질 준수에 대한 안전 측정 시스템 BASIC 백분위수(Safety Measurement System BASIC percentiles)	정량적	백분위수	TR-RO-540a.2
	환경으로의 유출 및 방출 (1) 건수, (2) 총량	정량적	수, 세제곱미터 (m ³)	TR-RO-540a.3

전 종업원(workforce)은 전자 근무조건 조건, 보건 및 안전

TR-RO-320a.1. (a) 직접고용 종업원(direct employee) 및 (b) 간접고용 종업원(contract employee)의 (1) 총기록 재해율(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TRIR) 및 (2) 사망률

1 기업은 업무 관련 재해 및 질병에 대하여 총기록 재해율(TRIR)을 공시해야 한다.

1.1 상해 또는 질병이 사망, 작업손실일, 작업 제한 또는 전직, 응급처치 이외의 의학적 치료 또는 의식상실을 초래하는 경우, 기록대상 재해로 간주된다. 또한, 의사 또는 면허를 가진 전문 의료인의 진단을 받은 심각한 상해 또는 질병은 사망, 작업손실일, 작업 제한 또는 전직, 응급처치 이외의 의학적 치료 또는 의식상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기록대상 재해로 간주된다. 이 정의는 U.S. 29 CFR 1904.7에 따른다.

1.1.1 응급처치는 정규 의료 지원이 제공되기 전에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긴급 조치 또는 치료로 정의된다.

1.1.2 기업은 기록대상 재해와 응급처치의 정의에 적용 가능한 관할국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2 미국 산업안전보건청(The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OSHA Forms 300, 300A, 301에 관한 지침(guidance for OSHA Forms 300, 300A, and 301)」에서 상해 또는 질병이 기록대상 재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제공한다.~~

2 기업은 업무상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공시해야 한다.

3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text{통계 수치} \times 200,000) / \text{보고기간의 모든 종업원의 총근로시간}$

3.1 비율 계산에서 200,000은 연간 50주 동안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100명의 상근직 종업원이 연간 제공할 수 있는 총시간을 나타낸다. 미국 노동통계국(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은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 재해율 계산

법(How to Compute a Firm's Incidence Rate for Safety Management)" 및 "재해를 계산기 및 비교 도구(Incidence Rate Calculator and Comparison Tool)"에서 비율 계산에 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4 공시 범위는 업무상 재해만을 포함한다.

4.1 업무상 재해는 업무 환경에서의 사건이나 노출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을 의미한다.

4.2 업무 환경은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거나 고용 조건에 따라 존재하는 사업장 및 기타 장소이다.

4.3 업무 환경에는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종업원이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자재도 포함된다.

4.4 종업원이 출장 상태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해당 직원이 상해 또는 질병 발생 시점에 고용주의 이익을 위한 업무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

4.5 업무상 재해는 이전에 기록된 상해 또는 질병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례여야 한다. Forms 300, 300A, 301에 관한 OSHA 지침은 재해의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을 비롯하여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였으나 업무 관련성이 없어 면제되는 재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5 기업은 다음 범주별로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5.1 직접고용 종업원은 상근직, 단시간 근무자(short service)²⁾, 비상근직, 임원, 노무직(labour), 연봉제, 계절제(seasonal), 이주(migrant) 또는 시간제 종업원과 같은 고용 유형과 관계없이 기업 급여 지급 종업원대상자로 정의된다.

5.2 간접고용 종업원은 급여 지급 대상자는 아니나 기업의 일일 감독을 받는 종업원으로 정의되며, 독립 계약자 및 제3자(예: 임시직 취업 알선소 및 노동중개인)를 통해 고용된 차를개인을 포함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단시간근로자'와는 별개의 용어

6 공시 범위에는 종업원 소재지 또는 고용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이 포함된다.

표 C6- TR-RO-320a.1 지표에 제안된 개정 접근법

<p>개정 접근법 2, 3 복합 적용</p> <p>(1) 지표 범위 및 용어를 지정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여 지표를 개정하고, (2) 적용 가능한 관할국별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지표를 개정</p>
<p>제안된 개정안의 근거는 IF-EU-320a.1과 동일하다. (표 C4 참고)</p>

TR-RO-320a.3. 운전자 건강 위험 관리를 위한 장단기 접근법에 대한 설명

1 기업은 종업원의 건강 위험 노출을 평가 및 감독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설명해야 한다. 종업원의 건강 위험에는 피로, 수면 부족, 비만 및 관련 질환, 고혈압, 정신 및 정서 건강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1 논의할 관련 노력에는 위험 평가, 장기 건강 연구 참여, 건강 감독 프로그램, 전자 기록 장치(Electronic On-Board Recorders, EOBR)가 포함될 수 있다. 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기업은 단기(즉, 급성) 위험과 장기(즉, 만성) 위험 측면에서 관리 접근법을 설명해야 한다.

3 공시 범위는 트럭 운전자를 중심으로 해야 하나 관련된 경우 다른 종업원을 포함할 수 있다.

4 기업은 운행시간, 일정 관리, 수면 무호흡증 및 피로 관리에 대한 적용가능한 관할국별 법률이나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the U.S.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와 미국 연방운송회사안전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의~~ 규정 및 권고사항 준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표 C7- TR-RO-320a.3 지표에 제안된 개정 접근법

<p>개정 접근법 3</p> <p>지표 범위 및 용어를 지정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여 지표를 개정</p>
<p>TR-RO-320a.3에 대해 제안된 개정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대한 참조사항이 기업이 속한 관할국의 참조사항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 외에는, 제안된 지표는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p>

사고 및 안전 관리

TR-RO-540a.1. 도로 운송사고(incident) 및 재해(incident) 건수

1 기업은 직접고용 종업원(direct employees) 또는 간접고용 종업원(contract employees)과 관련된 도로 운송사고 및 재해 총건수를 공시해야 한다.

1.1 직접고용 종업원은 상근직, 단시간 근무자(short service)³⁾, 비상근직, 임원, 노무직(labour), 연봉제, 계절제(seasonal), 이주(migrant) 또는 시간제 종업원과 같은 고용 유형과 관계없이 기업의 급여 지급 대상자로 정의된다.

1.2 간접고용 종업원은 급여 지급 대상자는 아니나 기업의 일일 감독을 받는 종업원으로 정의되며, 독립 계약자 및 제3자(예: 임시직 취업 알선소 및 노동중개인)를 통해 고용된 개인을 포함한다.

~~1.31.1 사고는 미국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49 390.5T 정의에 따라 주간(interstate) 또는 주내(intrastate) 통상(commerce)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상업용 차량과 관련된 사고로, 하나의 결과로 발생하거나~~

~~1.1.1 사망, 또는~~

~~1.1.2 상해로 인해 사고 현장을 벗어나 즉시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체 상 상해~~

~~1.1.3 환 대 또는 사고로 인해 하나 이상의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사고 현장에서 견인차량 또는 다른 차량을 통해 차량(들)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1.41.2 사고에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1.4.11.2.1 정차된 차량의 승하차에 국한된 사고~~

~~1.4.21.2.2 화물 상하차에 국한된 사고~~

~~1.51.3 재해는 인가받은 차량이 영업용 운행 중 기록 재해(미국 산업안전보건청(The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정의한 바에~~

3)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단시간근로자'와는 별개의 용어

따른), 차량 손상 또는 기타 재산상의 손상을 야기하는 사건에 관련된 경우로 정의된다.

1.5.1 상해 또는 질병이 사망, 작업손실일, 작업 제한 또는 전직, 응급처치 이외의 의학적 치료 또는 의식상실을 초래하는 경우, 기록대상 재해로 간주된다. 또한, 의사 또는 면허를 가진 전문 의료인의 진단을 받은 심각한 상해 또는 질병은 사망, 작업손실일, 작업 제한 또는 전직, 응급처치 이외의 의학적 치료 또는 의식상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기록대상 재해로 간주된다.

1.5.2 응급처치는 정규 의료 지원이 제공되기 전에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긴급 조치 또는 치료로 정의된다.

1.5.3 기업은 기록대상 재해와 응급처치의 정의에 해당 관할국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시 범위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 교통안전위원회(U.S.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기관 해당 관할국의 법률 또는 규제 당국에 보고된 사고 및 재해를 포함한다.

표 C8- TR-RO-540a.1 지표에 제안된 개정 접근법

<p>개정 접근법 2, 3 복합 적용</p> <p>(1) 지표 범위 및 용어를 지정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여 지표를 개정하고, (2) 적용 가능한 관할국별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지표를 개정지표 범위 및 용어를 지정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여 지표를 개정</p> <p>(1) 표 C4와 C6과 유사하게, 제안된 지표 개정안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한 참조사항을 삭제하고, 공시에 포함될 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SASB 기준에 걸쳐 그러한 직원 범주를 정렬하기 위해 지표의 기술 프로토콜 내에서 주요 참조 사항을 정의한다.</p> <p>(2) 제안된 지표 개정안은 또한 사고 및 재해 보고에 대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참조사항을 해당 관할국의 법률 또는 규제 당국에 대한 참조사항으로 대체한다.</p>

~~TR-RO-540a.2. (1) 안전하지 못한 운행, (2) 운행 시간 준수, (3) 운전자 신체 건강, (4) 통제 물질/알코올, (5) 차량 유지관리, 및 (6) 유해물질 준수~~ 대한 안전 측정 시스템 BASIC 백분위수(Safety Measurement System BASIC percentiles)

1 ~~기업은 다음 행동분석 및 안전개선범주(Behavior Analysis and Safety Improvement Categories, BASICS)에 대한 미국 연방운송회사안전청(FMCSA)의 안전측정시스템(Safety Measurement System, SMS)에 따라 계산한 백분위수를 공시해야 한다.~~

~~1.1 안전하지 못한 운행~~

~~1.2 운행시간(Hours-of-Service, HOS) 준수~~

~~1.3 운전자 신체 건강~~

~~1.4 통제 물질/알코올~~

~~1.5 차량 유지관리~~

~~1.6 유해물질(Hazardous Material, HM) 준수~~

2 ~~기업은 가장 최근 보고기간이 끝나는 월에 각 BASIC 백분위수를 공시해야 한다.~~

3 ~~기업은 FMCSA의 개입 기준점(Intervention Thresholds)과 관련해 백분위수를 논의할 수 있다.~~

표 C9- TR-RO-540a.2 지표에 제안된 개정 접근법

개정 접근법 4

BASIC 지표 삭제

행동분석 및 안전개선범주(BASIC) 백분위수에 대한 미국 연방운송회사안전청(FMCSA)의 안전측정시스템(SMS)과 동등한 국제적 지표가 확인되지 않았고, SMS는 미국 고유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운송업체를 분류하고, 사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는 운송업체를 식별하며, 운송업체가 FMCSA에 의해 포착, 분석 및 처리된 특정 위험 요소를 관리할 유인을 제공한다. 미국 데이터만을 통해 도출된 BASIC 백분위수 계산은 미국 이외의 관할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 주체의 다른 관련 지표가 유지된다면, BASIC 지표의 삭제는 공시 주체의 완전성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참고: 항공 운송 및 물류(TR-AF) 산업과 폐기물 관리(IF-WM) 산업의 SASB 기준

에는 위와 유사한 지표(TR-AF-540.a와 IFR-WM-320a.2)가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SASB 기준 전반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TR-RO-540a.2와 유사하게 제거될 것이다.

TR-RO-540a.3. 환경으로의 유출 및 방출 (1) 건수, (2) 총량

1 기업은 (1) 유해물질이 환경으로 유출 및 방출된 총건수를 공시해야 한다.

1.1 유해물질은 ~~CFR 49에 따라 미국 교통부 장관이 상업용으로 운행 시에 비합리적인 건강, 안전 및 재산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해당 관할국 법률 또는 규제 당국이 판단하고(폭발물, 방사능 물질, 전염성 물질, 가연성 액체 또는 고체, 가스, 독성, 산화성 또는 부식성 물질, 압축가스 등), 연방 유해물질수송법(Federal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Law) 제5103조 유해물질 수송법에 따라 유해물질로 지정되어진 물질 또는 자재로 정의된다.~~

1.1.1 유해물질의 범위는 유해물질, 유해폐기물, 해양오염물질, 고온물질 및 해당 관할국의 법률·규정에 의해 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포함한다.

1.1.2 기업은 위험폐기물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의 통제 및 처리에 관한 유엔환경계획(UNEP) 바젤협약의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

2 기업은 (2) 환경에 유출 및 방출된 유해물질의 총량을 세계공미터로 공시해야 한다.

2.1 유출 및 방출량은 추후 회수, 증발, 또는 기타 형태로 소실된 물질의 양을 차감하지 않고 환경에 도달한 총유출 추정량으로 계산해야 한다.

3 토양과 물 모두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유출은 유출량을 토양과 물에 적절히 배분하여 물에 대한 단일 유출량으로 보고해야 한다.

4 기업은 토양 및 물에 대한 개별 유출을 추가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4.1 토양과 물 모두에 대한 유출로 적합한 유출은 토양과 물에 적절히 할당된 수치로 하여 물에 대한 단일 유출로 보고할 수 있다.

5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1) 탄화수소와 (2) 유해물질 등의 유형별로 유출 및 방출량을 제공할 수 있다.

표 C10- TR-RO-540a.3 지표에 제안된 개정 접근법

<p>개정 접근법 1, 2, 3 복합 적용</p> <p>(1) 유해물질을 정의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참조하도록 지표를 개정하고, (2) 유해물질의 일반적 정의를 제공하여 지표를 개정하고, (3) 해당 관할 당국이 정의한 유해물질을 참조하도록 지표를 개정</p>
<p>(1) 다른 유사한 SASB 기준 측정 지표와 일치하는 바젤 협약을 사용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옵션은 해당 관할국에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p> <p>(2) 이 지표에는 유해물질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일반적인 참조사항을 작성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유해물질의 목록은 모든 관할국에서 가능한 모든 유해물질 등급을 포함하거나, 다른 관할국의 특정 규제의 변경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을 수 있다.</p> <p>(3) 대부분의 작성자는 해당 관할국의 법률이나 규정 및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 제안된 지표를 기업이 이미 사용하는 관할국의 정의와 일치시키면, 공시를 단순화하고 작성자의 작성비용을 줄일 수 있다.</p> <p>참고: 해상 운송(TR-MT) 산업의 SASB 기준에 유사한 측정 지표인 TR-MT-160a.3이 포함되어 있으며, SASB 기준 전반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TR-RO-440a.3에서 제안된 개정과 유사하게 개정될 예정이다.</p>



IFRS[®]

Foundation

Columbus Building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K

Tel **+44 (0) 20 7246 6410**
Email **customerservices@ifrs.org**

ifrs.org